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과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정선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과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정선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 신청기간 : 2000. 2. 1. ~ 2. 10.(10일간)
- 지원대상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독농가 등)
- 사업내용
 -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이 제정된 품목 (단,양곡류 제외)
 - ◇ 농산물 소포장재사업 : 10kg단량 이내 소포장으로서 농가 자율적 제작
- 지원조건 : 포장자재비의 30%지원으로서 사업량이 생산자조직에서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 10a당 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과다 신청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나 군청 농림과(☎ 02-560-23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1. 목 적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 유통, 견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바코드 부착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통명거래 기반 구축
- ◇ 공동계산조직 및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생산자조직의 유통활성화와 안전농산물의 지속적 공급 실현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

- ◇ 비포장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유도로 공정·투명거래 정착
- ◇ 유사도매시장과 차별화 추진으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 ◇ 농산물 표준바코드 부착출하 촉진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통명거래 기반 조기구축
- ◇ 공동계산조직 육성·지원을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물류비절감
-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

- ◇ 비포장 농산물에 대한 규격출하 촉진 및 공정·투명거래 정착
- ◇ 공영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개선과 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3. 근거법령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의 포장재 지원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제5조(품질인증),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지원계획

구 분		'92~'98	'99	2000	2001예산(안)
포장화 미흡품목	사업량(천매)	639,000	191,000	187,000	184,000
	계 (백만원)	325,357	129,727	138,380	156,400
	국 고	56,020	40,749	41,514	46,920
	지방비	54,446	12,897	—	—
	자부담	214,891	76,081	96,866	109,480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사업량(천매)	—	—	—	77,000
	계 (백만원)	—	—	—	57,750
	국 고	—	—	—	17,325
	지방비	—	—	—	—
	자부담	—	—	—	40,425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사업량(천매)	—	—	—	11,454
	계 (백만원)	—	—	—	8,590
	국 고	—	—	—	2,577
	지방비	—	—	—	—
	자부담	—	—	—	6,013

5. 사업비 배분

가. 포장화 미흡품목

(1) 시·도별 예산 배분기준

- ◇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 전년도 사업량, 당해년도 사업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
- ◇ 전전년도 예산불용, 전년도 부적정 지원 시 도는 해당액 감액
 - 전전년도 불용액 발생, 전년도 사업의 지원기준 위반,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추진 실태가 좋지 않은 시 도는 예산 감액

◇ 우수 시·도는 특별지원 : 예산의 10%이내

-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도에 특별지원
- 전년도 사업비의 차등지원 실시 등 사업추진 우수 시·도는 특별지원

(2) 항목별 반영 비율

항목별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	전년도 사업량	당년도 사업신청량	계	사업추진에 따른 증감	
					불용액 발생	평가 결과
배분비율	70%	20%	10%	100%	5%이내	5%이내

※ 시·도의 사업신청량 이내로 배분하되, 2001년도 사업비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2000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한 다음,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 우수 시·도에 추가 배분

(3) 사업추진 실태에 따른 증감 세부기준

◇ 감액

- 불용액 발생시 : 당초 예산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을 적용하되, 최대 5%까지 감액
- 사업추진 실태 평가 :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1회당 0.1%, 총 지원건수 대비 지원기준 위반건수 비율을 적용하되, 최대 5%까지 감액

◇ 증액(7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로 구분)

-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도 : 불용액 발생 부분 감액분 만큼 증액
- 규격출하사업 추진 우수 시·도 : 사업추진실태 평가결과 감액분 만큼 증액
 - 시·도의 사업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총 지원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적은 우수 시·도 3개를 선정
 - 감액분을 1위는 5할, 2위는 3할, 3위는 2할로 나누어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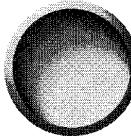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1) 시·도별 예산 배분기준

- ◇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실적(생산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
- ◇ 공동계산물량은 전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량을 기준으로 배분

(2) 항목별 반영 비율

항목별	전년도 및 당해년도 공동계산물량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	전전년도 친환경농산물 표(생산계획량) 시사용신고실적	계
배분비율	10%	70%	20%	100%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1) 예산 배분기준

- ◇ 전전년도 도매시장 반입액제 품목의 도매시장 포장품 반입실적 및 종합 유통센타(물류센터) 포장품 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

(2) 항목별 반영 비율

- ◇ 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타(물류센터)의 포장품 반입량을 동일하게 적용

6. 2001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유통비용 절감
- ◇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신용·공정거래를 촉진
- ◇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농산물에 표준바코드 부착·유통으로 디지털 유통기반 조기구축
- ◇ 공동계산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유도로 규격출하 촉진
- ◇ 농산물의 공정·투명거래 정착 및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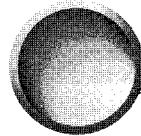
(2) 지원대상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농산물을 규격출하·공동으로 계산하는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

(3) 사업내용

- ◇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카 포함), P.E대, P.P대 등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곁포장내의 속포장을 포함하며,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표준거래 단량 이면서 농산물표준포장치수(총 87개 모듈)
 - 스치로폼 상자는 2002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대상품목

〈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 적용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단, 양곡류 제외)

◇ 우선지원 대상품목

- 알타리무, 열무, 열갈이배추, 파(대파, 쪽파 포함), 양파, 수박(조롱수박 제외), 양배추, 감자, 고구마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열갈이배추 제외), 마늘]
 -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경우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 후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별지 제3호서식) 제출시 지원 가능

◇ 추가지원가능 품목 : 9개

- 우선지원 대상품목 지원후 사업비가 남고, 지역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경우 시 · 군과 농관원출장소장, 농협 시 · 군지부장이 합의 선정
- 단, 지역적 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이 표준규격출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품목수 만큼 추가 지원 가능품목에 포함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적용품목

- 공동계산조직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 :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
- 품질인증 조직 :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 적용 품목 : 2001년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열갈이배추 제외), 마늘]

(5) 지원기준 및 조건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우선지원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신청량의 100%를 지원

- ◇ 추가지원 가능품목은 규격출하품 소비지 품질평가 및 자체품질관리 활동정도 등에 따라 생산자 조직을 평가·분류하여 아래의 조직 등급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사업량은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 10a당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과다 신청된 경우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 가 점 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 사업량	신청량의 100%	신청량의 90~70%	신청량의 30%이하

※ 생산자조직 평가표 : 별첨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신청 및 제작수량의 100%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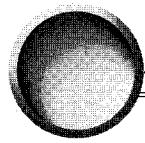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포장재 지원>

- ◇ 출하수량의 100%를 지원

나. 2001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계	사 업 비 국고보조	자부담
포장화 미흡품목	천매 184,000	156,400	46,920	109,480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77,000	57,750	17,325	40,425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11,454	8,590	2,577	6,013
합 계	272,454	222,740	66,822	155,91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4-941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관리과 (031)446-0126 ~ 7

◇ 시·도: 농산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원 품질관리과

◇ 시·군: 산업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대상자 선정

〈포장화 미흡품목〉

(1)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별 최저 한도액 설정

◇ 사업시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한도액 설정·운영

-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 한도액 : 100만원(국고)

- 단, 우선지원 품목 사업대상자는 예외

(나) 우선 순위

① 우선지원 대상품목을 규격포장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②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생산자조직은 차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해당등급별 지원기준을 최대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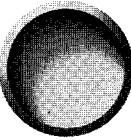
③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조직이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그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최우수조직의 지위기준을 주용하여 지위

④ 평가결과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이 부진하여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은 생산자조직은 시장·군수,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전년도 평가 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5) 개인단위 신청자(조직지원 숙제적용 방법에 따름)

(2) 선점절차

◇ 생산자조직을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을 거쳐 시·군에 2001. 1. 10



까지 제출

- 단, 전년도에 신청한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생략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역별 산지유통인연합 회장 확인을 필한 다음, 경작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신규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2001. 1월중)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 시·군은 농관원,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우선 순위

① 공동계산을 하고 있는 생산자조직

(표준바코드 부착시 우선 지원하고, 출하물량이 많은 순으로 지원)

②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 재배 순으로 지원)

③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생산자조직(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

④ 개별농가 단위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 재배 순으로 지원)

⑤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

(2) 선정절차

◇ 생산자조직(개별 품질인증을 받은 자, 개별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 포함)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내를 '디지털유통'으로 기재한다)를 읍·면을 거쳐 2001. 1. 10까지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취합하여 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에, 공동 계산조직은 농협에 각각 통보

◇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와 신청조직의 전년도 출하(신고)실적을 기재하여 시·군에 통보(2001. 1월중)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기재

- ◇ 시·군은 농관원,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1) 우선 순위

- ◇ 대상품목[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마늘]별 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

(2) 선정절차

- ◇ 대상품목[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마늘]별 년간 규격출하수량을 감안하여 품목별 자금집행금액 책정

- ◇ 품목별 책정 금액을 기준으로 규격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

라. 사업 시행

<포장화 미흡품목>

(1) 사업비 집행방법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또는 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재에 한하여 자금 지원

- 단, 유통능률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 군수, 농관원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비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 출장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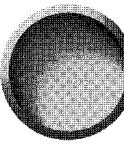
- "표준규격품" 문구, 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 포장재 제작연도표시 의무화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자금요청을 할 때에는 농관원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품목, 단량, 포장재규격(포장치수 포함),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및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포장재 1매와 시·군에 제출할 증빙서류 사본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지원대상 포장재의 표시사항, 포장재치수 등이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

- 단,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공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서 발급한 농산물규격포장출하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시·군에 추가로 제출 하였을 경우에만 포장재비 지원



- 이 경우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지역연합회)를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의 규격포장재 확인(제작수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집행
- 도매시장 포장출하 우대품목의 경우는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 등 출하처의 증빙서류(별지 제3호서식)제출시 자금 집행
- 사업단가는 포장재의 용적(길이×너비×높이)을 계산하여 아래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품단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적용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구 분	40,000cm ³ 미만	40,000~50,000cm ³ 미만	50,000~60,000cm ³ 미만	60,000cm ³ 초과
최고사업단가	850원/매	900	1,000	1,100

※ 그물망, PE포대, PP포대는 매당 450원을 넘을 수 없음

- 보조지원액은 제작매수(사업량범위 이내), 사업단가, 보조비율(30%)을 적용 산출

※ 제작매수가 당초 신청한 수량보다 적을 경우 사업량은 실제작수량에 사업량 확정시 적용한 생산자조직 등급의 사업량 반영율을 곱하여 재산출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 시장·군수는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품목, 사업량,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과 합의하여 변경 시행
- ◇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는 조직평가를 생략하고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지원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1) 사업비 집행방법

- ◇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르되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은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단량), 품질인증 조직은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단량)을 지원
 - 친환경·품질인증품은 포장재중량과 포장재 제작연도표시만 의무화
 - 공동계산조직은 관할 농협이 발행하는 공동출하·계산물량 확인서에 의해 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은 신청수량보다 적게 제작한 경우 포장재제작수량을 기준으로 포장재비 지원

(2) 사업계획 변경

- ◇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름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1)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 지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재에 한하여 자금지원(포장화 미흡품목의 절차에 따라 표준규격인지 여부 확인)

- ◇ 시·군 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이하 공사)와 농협중앙회(종합유통센타)는 각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품목별, 분기별 출하물량과 예산액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시행

- ◇ 사업단가는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르되 출하비용 일부 포함

(나) 사업비 지원절차

◇ 공영도매시장

- 출하자가 포장화 우대품목을 규격포장출하 하여 도매시장 해당 법인에 상장하면 해당법인은 품목별, 규격별 포장재 수량을 확인 한 후 규격출하 지원금액을 경락대금과 같이 지급한 후 해당법인은 확인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지급요청

- 포장화 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 경우에는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신고한 물량에 한하여 도매시장 관리자 또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관할 공사는 도매법인(또는 중도매인)의 지급요청서를 검토한 후 자금집행

- 공사는 규격출하 지원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집행 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시 도매시장포장화 우대품목 규격출하 지원금을 우선 지불한 후 정산 가능

◇ 종합유통센타(물류센터)

- 출하자는 규격출하 지원 청구서를 종합유통센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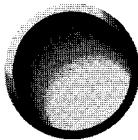
- 종합유통센타는 입하분에 대해 청구서와 현품을 대사 확인후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원

- 종합유통센타는 규격출하 지원금을 지급한 확인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요청

-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타 요청내역 확인후 예산범위내에서 시·군에 예산 교부 신청

- 시·군은 농협중앙회로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지원 자금 집행

-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타별로 포장화우대 지원금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포장화 미흡품목 >

(1)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장 비치

-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별 포장재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관원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에게 통보
 - 기록사항: 지원대상자명, 품목명, 조직등급,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 지원금액, 규격출하계획량, 규격출하 실적 등

(2)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 협조: 농관원, 농협

– 교육내용: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 등

- ◇ 시장·군수는 규격출하사업 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지도에 활용

- ◇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 농관원출장소장은 소비자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 농협,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시·군, 농협 시·군지부장은 소비자 품질평가결과를 읍·면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

- ◇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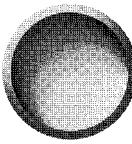
-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결정시 반영

(4) 제재사항

- ◇ 시장·군수가 생산자조직별 사업량 결정시 농관원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조치하고 이를 우수 시·도, 시·군에 추가 배정 조치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지원대장 비치

-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여 기록사항에는 조직등급 대신 조직종류(공동계산조직, 품질인증, 친환경 표시)를 기재

(2) 사업대상자 교육 · 홍보

-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

(3) 규격출하 지도 · 점검 및 평가

-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여, 친환경 ·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 출장소장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지도점검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 >

(1) 지원대장 비치

- ◇ 시 · 군 도매시장 관리자와 농협중앙회(종합유통센터)는 일자별로 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 상황을 기록 보관

- 기록사항 : 지원대상자명, 품목명, 단량, 포장재종류 및 규격, 출하량, 지원수량, 지원금액, 기타 품목별 규격출하 총 수량 등

(2) 교육 · 홍보

- ◇ 시 · 군 도매시장관리공사와 농협중앙회(물류센터)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 · 홍보 실시

(3) 규격출하 지도 · 점검 및 평가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

나. 보고

< 포장화 미흡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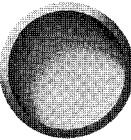
(1)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 시 · 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와 농협 시 · 군지부에 통보

(2) 시 · 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지원 〉

- (1) 시장·군수는 도매시장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 (2)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유통센타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3)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다. 기타

- (1) 이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는 각종 특산품전,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

7. 2002년도 사업실시요령

〈 포장화 미흡품목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나. 신청자격

-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 농협은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신청절차

- ◇ 규격출하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관할 시·군이 선정한 지원 대상품목(18개)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제출
- * 단,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우선지원 품목에 한함

라. 구비서류

-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2001년도와 같음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 〉

- ◇ 2001년도 사업요령에 따른다